■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